

인론

언론중재위원회 NEWS



사람

제148호

이달의 주요뉴스

언론중재위원회
2012년도 임시총회 개최

인터뷰

국가인권위원회
김영혜 상임위원

A U T U M N

2012.

10

CONTENTS

2012년 10월. 제148호



03



04

이달의 주요뉴스
03 언론중재위원회 2012년도 임시총회 개최

인터뷰 - 국가인권위원회 김영혜 상임위원
04 “조정은 열린 마음과 정성이 중요”

위원단상
06 오르고 또 오르고 싶어도...

도서관 탐방
07 라이브러리 로드(Library Road),
함께 떠나볼까요?

언론분쟁 경험기
08 나만의 작은 속삭임을 큰 외침으로
만들어 준 언론중재위원회

판례토록
10 엠바고와 보도유예의무

이용재의 잡문 노트
11 이름만큼 춥지 않은 나라, 아이슬란드

12 위원동정

13 위원회 소식

14 조정중재사례 소개 및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언론피해구제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언론사, 대학, 기업, 공공관 등을 대상으로 언론보도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2012년도 임시총회 개최

임원과 운영위원 및 시정권고위원 선출



“언론중재제도,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려야”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9월 1일자로 중재위원 49명이 위촉됨에 따라 1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2년도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임기만료로 결원이 된 임원과 운영위원 및 시정권고위원을 선출했다.

부위원장에는 김종량 위원(전북중재부)이, 감사에는 위철환 위원(경기중재부)이 각각 재선출됐다. 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종량 부위원장, 장진훈(서울 제2중재부), 김정숙(대구중재부), 남부희(경남중재부) 위원 등 4명이, 시정권고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일(서울 제2중재부), 한천수(서울 제4중재부), 어경택(서울 제5중재부) 위원 등 3명이 각각 재선출됐다.



권성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위원회는 처리건수의 비약적 증가라는 양적 성장과 함께 피해구제보도문의 실효성 제고, 손해배상액수의 산정기준 개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변론 서비스 제공, 중재의 활성화 등 실무개선과 제도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이는 열린 마음과 공정한 자세로 매 사건마다 최선을 다해 오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이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권 위원장은 또 “언론중재제도가 해외에 수출해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제도임에도 널리 확산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앞으로 언론중재제도를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려 우리 문화와 제도의 수출이라는 새로운 여정을 개척해 나간다면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은 열린 마음과 정성이 중요”



국가인권위원회
김영혜 상임위원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
세계여성법관회의 부회장
언론중재위원 (2008. 3. ~ 2009. 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8년 아시아인 최초로 세계여성법관회의의 부회장으로 선출돼, 2010년 세계여성법관회의의 한국 유치를 이끌어냈던 김영혜 전 부장판사. 21년간의 판사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일하다 2010년 11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혜 상임위원을 만났다.

판사, 변호사, 공직자로서 다양한 직역에서 활동하셨는데, 그동안 다뤘던 사건 중에 가장 기억에 남거나 보람 있었던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 퇴직 무렵에 신기술투자 사건이 있었는데, 전문적인 내용이라 심리가 어려워 재판이 오래 걸렸습니다. 원고는 승소했지만 동업회사의 편법에 따라 사실상 경제적 이득은 별로 없음에도 진실과 정의를 찾아줘서 고맙다는 서신을 재판부에 보내왔습니다. 법관의 공정성과 진실발견을 위한 법관의 노력을 인정해 준 것에 대해 고맙았던 기억이 납니다.

세계여성법관회의의 부회장과 한국 유치 준비위원장을 맡으신 바 있습니다. 위원님 개인과 여성 법조인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으리라 여겨지는데, 그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계여성법관회의에서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여성법관이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기존에 여성 법관이 하기 어려웠던 기획과 집행 등 행정경험을 함으로써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야를 국내에서 해외로 넓힐 수 있었고, 국제적 회의체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국제기구에서 어떻게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후배들에게 이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성 법관이 소수자인 시절부터 활동해 오셨지만, 현재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이 확대되고 여

성의 사회적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나 위상의 제고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은 이 사회의 1/2을 구성하는 의미 있는 소수자 그룹입니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위상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 국가나 사회의 민주화, 기회균등, 인권, 소수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수자로서 살아본 경험과 감수성은 다 함께 하는 사회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은 권위적이지 않고 평등적, 민주적이며 상하 직급 간의 소통이 보다 자유로와 사회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사회 전반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조명하는 칼럼을 언론에 오랫동안 기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가 강력사건, 자살 등 많은 그늘이 있고 밝지만은 않은 분위기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언론의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적 기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교육적, 정책적 기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날카로운 비판에만 치중하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거나 확대 재생산하는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 선정적,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자제하고 냉정하고 차분한 자세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언론은 독도문제, FTA, 올림픽에서의 판정 시비 등 국제적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과 절차 위주로 치밀하게 파고들며, 사회적 비리와 부패에 대해서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적극적 선제적 기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올바르게 나아가는 데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중재위원을 역임하셨고 판사로 재직하실 때에도 사건 당사자에게 조정을 많이 권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조정은 양보에 의해 타협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법률에 의해 형식적으로 시비를 가릴 경우 양금이 남는 것에 비해 마음의 분쟁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정에 있어서는 열린 마음과 정성으로 당사자들의 사정을 경청하고 어루만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정에 있어서도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 지나친 양보를 강요하는 것과 같이 정의의 기준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재즈콘서트 무대에 선 경험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는 가수와 즐겨 하시는 취미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이답지 않게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좋아합니다. 최근에는 조카와 함께 2NE1 공연을 보러 간 적도 있는데, 그들의 밝음과 새로운 사고와 표현이 마음에 듭니다.

예전에는 일과 업무에 묻혀 살면서 살림에 신경을 안 쓰다가, 요즘에는 요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요리 관련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요리의 오묘한 세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재위원으로 있으면서 당사자가 수긍하고 조정이 성립되는 것을 보면서 위원회의 순기능이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언론의 영향력이 커지고 소송이 복잡해질수록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독자분들도 언론분쟁과 관련된 문제는 먼저 언론중재위원회와 상의하면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회와 국민 간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져서 국민들이 위원회를 더 많이 알고 다가가기 바랍니다.

• 진행 / 이진숙(홍보팀장) • 정리 및 사진 / 이재범(홍보팀 차장)



박 성 희 위원
서울 제중재부
이화여자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오르고 또 오르고 싶어도...

무슨 객기였는지 모르겠다. 아니 건강검진 결과 정상 범위 이하의 근육량을 향상시켜보겠다는 야망(야무진 망상)이 더 정확한 동기였을지도 모른다. 헬스클럽에서 무거운 것을 들었다 놔다 하는 것은 영 적성이 아니라고 평소 생각해 온 나는 새 학기를 맞으면서 뭔가 몸을 긴장시킬 프로젝트에 돌입하기로 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스포츠클라이밍(인공암벽등반)! ‘중력을 거부하고 수직의 벽을 박박 기어오르는 하릴없는 절박함에 몸을 맡기다 보면 내 몸의 살들이 좀 긴장하겠지. 그러다보면 살아야겠다는 위기감이 일부 살들은 스스로 근육으로 탈바꿈할지도 몰라...’

그러나 레슨 첫날부터 몸의 근육이 생기기엔커녕 지진아의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는 자아성찰의 시간이 이어졌다. 다른 학생들은 다 손을 뻗어 잡을 수 있는 저 플라스틱 조각(전문용어로 ‘홀드’라고 한다)에 왜 내 팔은 가서 닿지가 않는 걸까. 다른 수강생들은 저 끝까지 올라가는데 왜 나는 지상 언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뒤져보니 스포츠클라이밍을 배우기 적당한 나이는 10대이고, 20대에 전성기를 구가한다고 한다. 팔 다리는 긴 사람이 유리하고, 특히 다리 힘이 중요하며, 악력이 필수다. 이제 곧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팔 다리도 짧고 가는 다리에 악력도 약한 나는, 그러니까 최하의 신체조건을 지닌 셈이다. 한 가지 위안을 삼는다면 그나마 과제중이 아니라는 점. 그러나 몸이 새털처럼 가벼우면 뒤편할 것인가. 몸을 지상에서 띄워 올려 벽을 기어오르기가 천금처럼 무거운데...

10명 안팎의 젊은이들과 함께 배우며 나는 사회지도층다운 희생정신을 발휘하고 있다. 나보다 못하는 젊은이가 하나도 없으니, 혹시 운동신경이 둔한 젊은이라도 나를 보면서 자기가 밑바닥이 아님을 알고 안도할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애보시(無碍布施),

그러니까 두려움을 없애주고 만만하게 보여서 편안함을 선사하는 사회적 순기능을 도맡아 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의 꼴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 꼴찌가 되어보니 비로소 알겠다.

그래도 나는 안다. 비록 꼴찌지만 지금은 그만 둘 때가 아니라는 것을. 당분간은 꼬박꼬박 시간 맞춰 가면서 기초 동작과 요령들을 습득할 요량이다. 몸으로 못하면 눈으로 하고 머리로라도 기억하면서. 이런 걸 심상화(心象化, visualization)라고 하던가. 이론에 따르면, 머릿속으로 운동하는 상상을 하면 몸이 운동한 것으로 착각한다고 한다. 벽을 오를 때는 몸을 삼각형 형태로 해야 팔의 힘이 최소로 들며, 오버행 벽(90도를 넘는 벽)을 오를 때는 골반 뼈를 벌리고 발을 180도로 벌려 다리에 힘을 집중시켜야 한다. 마치 성냥팔이 소녀가 성냥불을 갖고 따뜻한 주방의 크리스마스 만찬을 상상하듯이, 나도 높지도 않은 벽을 앞에 놓고 상상한다. 저 뼈죽 튀어나온 홀드위에 손과 발을 얹고 나비처럼 사뿐히 비상하는 모습을.

나의 열정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얼마 전 거금 7만원을 주고 암벽등반전용 신발도 구입했다(사실 필수품인데 그동안 대충 운동화로 버텼었다). 집에 굴러다니던 조그만 악력기도 찾아내 가끔 손힘을 기르는 중이다. 그리고 레슨 갈 때마다 마음을 가다듬는다. 나를 보며 남들이 얼마나 큰 위안을 얻을 것인가. 이게 바로 나눔이며 봉사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만유인력을 온몸으로 느껴보고 싶은 사람, 제 몸 하나 지탱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 보고 싶은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이 자기보다 못나서 고민인 사람에게 나는 스포츠클라이밍을 자신 있게 권한다. 🍌



라이브러리 로드(Library Road), 함께 떠나볼까요?



임 미 숙
정책연구팀
위원회 자료실 담당

지난 7월, 외부기관 자료실의 운영·관리 시스템과 각 기관 자료실이 소장하는 언론법제 정보를 살피기 위해 국내기관(서울지역) 8곳을 탐방했다.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한국언론도서관, 법원도서관, 헌법재판소 도서관, 저작권도서관, 한국법제연구원 자료실, 인권자료실이 그곳이다. 법원 및 언론유관기관의 발간자료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위원회 자료실의 이용 활성화 및 신규 자료구입 계획에 반영할 수도 있는 알찬 기회였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하에 설치된 만큼 해당 부처 및 소속기관의 발간자료를 다량 비치하고 있다. 국내의 방송통신법제 및 각종 현안사업에 관한 사료들이 있어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학술자료 탐색이 가능한 곳이라.

한강을 끼고 여의도로 향하니 국회의사당이 눈길을 끈다. 이곳에는 국회도서관이 있다. 늦은 밤까지 개방되는 넓은 열람실과 쾌적한 편의시설 덕분인지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 곳곳을 메우고 있다. 최신자료실, 정간열람실, 디지털 입법자료센터 등 방대한 지식창고가 눈앞에 펼쳐진 기분이다. 휴관일(둘째·넷째 토요일, 국정공휴일)을 제외하면 토·일요일(오전 9시~오후 5시)에도 이용할 수 있더니 더욱 반갑다.

여기서 잠깐, 광화문 프레스센터 내부에는 몇 개의 도서관이 있을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에서 내리니 위원회 자료실이 보인다. 호기심에 좀 더 높은 층을 눌러본다. 13층에 한국언론도서관이 있다. 국내의 언론분야 저널 및 연구자료 등을 오랜 기간 체계적으로 입수하여 관리해 온 한국언론진흥재단 소속의 도서관이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법률 관련 자료를 가장 광범위하게 수집·제공해 온 곳은 어디일까? 자연스레 발걸음이 서초동 법원단지로 향한다. 대법원 건물 안에 위치한 법원도서관은 전국 각급 법원도서관 중 소장자료 내역이 가장 많다

(총 332,525권, 2012년 6월 30일 기준). 민·형사 법원 조정사례 및 판례 등을 수록한 전문적인 법률자료가 풍부하다.

그런데, ‘공법(公法)에 관련된 자료가 좀 더 많은 곳은 없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한 곳이 떠오른다. 바로 헌법재판소 도서관이다.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과 함께 생겨나 헌법재판 및 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위원회 업무의 영역과도 맞닿아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다루는 헌법분야의 학술자원 확보가 중요하니만큼, 자주 방문하게 되는 곳이다.

그 다음으로 찾아가 본 곳은 개포동의 저작권도서관. 서울 강남우체국 건물 6층에 위치한 도서관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규제 완화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맞물린 방송법, 저작권법 등 매우 특수한 영역에 관한 참고자료가 많다.

잠깐 동안 양재천을 거닐며 노곤해진 몸의 피로를 풀었다. “라이브러리 로드”도 이제 종착점을 향해 간다. 좀 걷다보니 한국법제연구원이 보인다. 이곳에도 자료실이 있다던데... 한국법제연구원 자료실은 국내외 법령 정보의 수집·관리, 법제 관련 조사·연구자료로 가득했다. 특히 국외 방송·통신·문화법제에 관련된 참고자료가 많다.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해 무료로 연구원의 발간물 목록과 내용도 검색할 수 있지만,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뒤 도서관 자료회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 도서관 여행의 끝자락에서 들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자료실. 자료회원 및 단체가 방문·등기우편·택배를 이용해 자료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새롭다. 한 달에 한 번 인권영화가 매월 4째주 목요일에 상영되니 관심 있는 이들의 참석을 권한다.

하늘이 푸르고 부드러운 바람이 얼굴을 감싸는 가을이다. 수필로 메마른 감성을 채워도 좋고, 교양서로 지식을 채워도 좋겠다. 그렇지만 올해는 특별히 언론 관련 서적에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 🍂

나만의 작은 속삭임을 큰 외침으로 만들어 준 언론중재위원회



김 정 훈(가명) 회사원

기사를 작성했던 담당 기자와 통화를 하며 기사 내용에 오류가 있으니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을 했던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반응뿐이었다. 말로 다 할 수 없을만큼 속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거대한 언론사를 상대로 상대적 약자인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절망했다.

막막함과 허탈감 그리고 분노가 뒤엉켜 한동안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있다가 기자가 고작 일반 개인의 위치에서 당신이 뭘 할 수 있겠냐는 듯 조롱하는 말투로 나에게 던졌던 마지막 한마디가 떠올랐다. '저는 기사를 작성하는데 있어 실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A라고 표기를 했는데 과연 이 기사상에서 본인이 특정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잘못됐다는 내용 또한 제 추측이 아닌 담당자로부터 직접 들었던 내용입니다. 작성된 기사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으니 이의가 있으시다면 언론중재를 신청하시던가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겠다는 심정으로 정신을 차리고 인터넷에 언론중재라는 단어를 검색하니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가 있었다. 언론중재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대략적인 내용과 진행절차 등을 파악하고 조정신청

서 양식과 작성사례를 다운받아 정독을 했다. 개인적인 검토가 끝난 뒤 중재위원회로 전화를 걸어 상담 직원에게 재차 중요사항과 절차를 확인 후 바로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을 발송했다.

내가 언론중재위원회라는 생소한 곳에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고 조정을 요청한 이유는 신문사인 B사의 지면과 인터넷 기사 중 실명으로 표기는 되지 않았으나 정황상 다수의 사람들이 익명으로 처리된 A가 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특정됐으며, 사실이 아닌 추측성의 내용을 마치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기사가 작성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조정·중재사례집을 통해 기자가 얘기했던 '특정됐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찾아보았고, 기사상에서 A가 나라고 특정됐다고 판단한 나의 생각이 올바른지 상담 직원과의 통화로 재차 확인 후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며칠 후 기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기사를 처음 보고 나와 통화했던 당시 무관심과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던 기자의 말투가 많이 다급해져 있었다. 정말 신청을 하실 줄은 몰랐다면요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게재하겠으니 조정신청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 요지였다. 솔직히 서류를 접수하는 순간까지

도 ‘과연 이것이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만 가득했고 어떤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나를 도울지라도 거대한 신문사를 상대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거의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다만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런 억울함을 어느 곳이든 알려 호소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기자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으니 막연하기만 하던 언론중재 위원회라는 곳에 대해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다. 기자는 다급한 목소리로 언론조정 신청을 취소해 주면 안 되겠냐고 했지만 이미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한 번 다쳤던 내 마음의 상처를 다시 해집어 놓은 이 상황을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라 생각되어 거절했다.

다시 며칠 후 나의 조정신청 내용에 대한 B사의 최종 답변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그리고 다시 나에게 전해졌다. 마음을 가다듬고 답변서를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 내려가는데 내가 제안 받았던 조정 취소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인지 답변서에는 격한 어투로 조정신청을 반박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중재위원회로부터 조정을 받는 날 마지막으로 발인 내용을 정리하며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니 기사를 작성한 담당 기자가 아닌 해당 부서의 차장이 B사를 대표하여 참석했다. 곧 시작된 조정에서 다섯 분의 중재 위원들은 나와 B사 양측의 견해를 듣고 난 후 타당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주셨으며, 큰 의미는 아니었으나 경중을 울리는 의미로 했던 200만원의 손해배

상 청구에 대해서도 100만원으로 조정을 하자고 건의를 해주셨다. 최종적으로 중재위원회에서 내린 ‘조정을 같음하는 결정’에 대해 B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7일 이내에 당사자가 이의신청할 경우 법원에 자동으로 소제기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마지막 일주일 이 채 지나기도 전에 B사 차장으로부터 지면과 인터넷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정정보도를 하는 동시에 위원들께서 조정해 주신 합의금 또한 보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터졌던 이번 사건을 돌이켜보니 ‘과연 나 혼자였다면 해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마도 거대한 매스컴을 상대로 무엇인가 해보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을 하려 노력하는 중재위원님들과 양자간 의견 조율을 위해 수고스러운 일을 담당해 주신 조사관님께 이 지면을 빌려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기자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부하고 써버린 기사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정확한 근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다시는 나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

BOOK 이달의 책

말의 가격



앙드레 슈프랭 지음 | 사회평론 | 208페이지

세계적인 출판인으로 비영리 인문사회 출판사 ‘뉴 프레스(New Press)’를 이끌고 있는 앙드레 슈프랭은 자본이 미디어를 위협하는 현실을 고발하고, 세계 곳곳에서 실제로 시도된 미디어 정책과 실험 등을 살피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대형 미디어 그룹의 등장을 꼽는다. 신문사와 출판사를 인수한 대형 미디어 그룹의 경영자들이 미디어의 고유한 특성이나 개성, 공적 역할을 존중하지 않은 채 수익이 높고 이윤이 보장되는 책들의 판매에만 집중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전통적 신문의 활약이 여전히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신문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것은 독자를 되찾아오고, 신문의 중요성을 사회에 환기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밝힌다. 더불어, 노르웨이 사례를 본받아야 할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1965년 구성된 ‘인문학평의회’는 출판사로부터 일정 권수만큼 구입해 공공도서관에 제공하는데, 220종의 소설, 100종의 번역소설, 70종의 논픽션, 14개의 문화 관련 잡지를 구매한다고 한다.

결국 저자가 이 책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미디어의 공공성’이다. 구글과 아마존이 울리고 있는 수익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돈이 미디어를 지배하는 지금, 우리가 각성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양재규
정책연구팀 팀장, 변호사

엠바고와 보도유예의무

요즘 ‘엠바고(embargo)’ 라는 말이 기사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납치된 지 500일이 넘었다는 제미니호 관련 기사, 교도통신의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보도 모두 ‘엠바고’와 연관되어 있다.

현재 언론보도와 관련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엠바고’는 본래 외교·통상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였던 것으로 보인다. 1968년 10월 10일자 매일경제 1면 기사에서는 엠바고를 한 나라가 자국 내에 있는 외국국적의 선박에 대해 내리는 ‘출항금지명령’으로 설명한다. 그랬던 엠바고가 지금은 ‘시한부 보도유예’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엠바고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효력이다. 엠바고는 그것을 수용한 언론사에 보도유예의무를 부과하는가? 엠바고를 거절했거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닌 언론사는 또 어떻게 되는가? 엠바고를 취재원과 언론사 사이의 업무협조 정도로 이해하는 시각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어색할 수 있다. 그러나 엠바고를 깬 언론사에 대해 종 종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의 제재조치가 내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엠바고의 법적 효력을 검토하는 것도 전혀 무리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실제 엠바고의 효력과 관련된 판결이 지난 6월 27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2011가합3841).


소송의 발단은 작년 1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삼호주얼리호 사건이다.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는 두 차례에 걸친 군사작전 끝에 납치된 지 6일째 되던 날 극적으로 구출된다. 그런데 1차 작전이 실패로 끝나는 등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1차 작전이 실패로 끝난 후인 그 달 20일 A일보는 <소말리아 해적과 교전 해군 3명 부상> 제하의 1면 머리기사로 이 사실을 보도한다. 당시 1차 작전 실패 관련 보도는 국방부의 요청으로 구출작전이 완료될 때까지 엠바고가 걸린 상태였다.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관련 보도를 내지 않고 있었다. 결국, 국방부는 해당 기사를 문제 삼아 범정부 차원의 제재조치(기자실 출입제한 및 보도자료 제공중지)를 A일보에 내렸다.

A일보는 이 제재조치가 위법하다는 전제 하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물론, 엠바고였다. 과연 국방부 출입기자를 두고 있지 않은 언론사에도 해당 기관과 출입기자 사이에 체결된 엠바고는 효력을 미치는가? 미친다면 법률상의 보도유예의무가 발생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엠바고 요청을 받은 바 없는 취재기자라 하더라도 다른 취재기자들에 의해 엠바고 요청이 수용되었음을 알면서도 엠바고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관련 내용을 보도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보도하려는 특정 사안에 대해 엠바고 요청을 받은 바 없는 취재기자라 하더라도 당해 사안에 대해 엠바고 요청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존중하여 관련 사안의 보도를 유예하여야 할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에 따르면, 엠바고 대상이 아닌 언론사라도 엠바고 사실을 인지했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보도유예의무가 발생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안에 따라서’다. 궁금했던 점은 엠바고의 효력인데 ‘사안에 따라서’라는 말이 논점을 흐리고 있다.

결국, 이번 판결은 A일보가 보도유예의무를 깬 것이 위법하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엠바고가 언론사에 보도유예의무를 부과하는가’라는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엠바고 때문이 아니라 사안의 성격에 따라 보도유예의무가 발생하는 것처럼 해석된다. 그렇다면 사실상 엠바고 자체는 보도유예의무와는 무관한,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싶다.

엠바고를 깨고 단독보도를 한 A일보를 무조건 두둔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어차피 강제할 수도 없는 엠바고인데 그것을 깬다고 해서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다. 언론사나 정부 모두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들인데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이용재의 잡문 노트

이름만큼 춥지 않은 나라, 아이슬란드

이용재 (칼럼니스트)

얼마 전 아이슬란드에서 휴가를 보내고 왔다. 비옥(Biörk)이나 시규어 로스(Sigur Rós)와 같은 뮤지션으로 인해 예전보다 낮익다고 생각하는 나라지만, 그대로 지도만 놓고 본다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먼 나라다. 인천에서 런던,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와 같은 유럽의 주요 도시까지 약 열 시간 남짓 들여 날아간 다음, 비행기를 갈아타고 지루한 비행을 세 시간 남짓 더 견뎌내야만 한다. 케블라비크 국제 공항에서 수도인 레이카비크 도심까지 버스로 약 한 시간이 걸리니, 최소 서너 시간은 되는 비행기 환승 시간까지 따졌을 때 거의 하루에 가까운 시간을 쏟아 부어야 하는 셈이다.

아이슬란드는 최근에도 화산 활동으로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적이 있으며 지진활동이 활발하고 매년 1cm씩 좌우로 늘어나고 있는, 상대적으로 어린 땅이다. 이러한 특성을 십분 활용해 지열을 이용한 난방을 하므로 찬물을 쓰기가 더운물 쓰기보다 어려울 지경이다. 한편 10만 3000km²의 면적에 약 32만명이 살고 있어 유럽에서도 가장 인구밀도가 낮은 나라인데, 총 인구의 1/3 가량이 수도인 레이카비크에 몰려 있다. 8세기까지 무인도였으나 9세기 경 노르웨이에서 아일랜드의 노예를 데려와 정착한 것이 오늘날 아이슬란드의 시초가 되었다. 이후 1918년까지는 노르웨이를 거쳐 덴마크의 지배를 받아오다가 1918년 덴마크의 자치령이 되고, 1944년 공화국으로 독립했다.

‘아이슬란드’라는 이름 때문인지 사람들은 이곳의 날씨가 엄청나게 추울 것이라는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이 이름 또한 정착을 시도했던 노르웨이인이 데려온 가축을 추위에 다 잃은 뒤 얼음으로 덮인 피요르드를 보고 좌절에 빠져 붙인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 기온은 이름이나 위치만큼이나 춥지 않다. 오히려 반대로, 여름철이면 비행기로 다다를 수 있는 근처의 그린란드가 이름에 비해 훨씬 추운 땅이다. 따뜻한 북대서양 해류가 섬 전체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인데, 덕분에 가장 춥다는 겨울철에조차 아이슬란드의 최저 기온

은 영하 3~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 다만 연교차가 적고 1년 내내 저기압이 형성되므로 날씨의 변화가 심해 안개가 끼거나 흐린 날이 많다.

이러한 기후 덕분에 식물이 잘 자라지 않아 아이슬란드의 전통 음식은 허브나 향신료의 비중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조금 과장을 보태 세계 10대 과식 가운데 하나로 손꼽는 대표 음식 ‘hákarl(아이슬란드어로 ‘상어’)은 그린란드 상어의 고기로 만드는데, 날로 먹을 경우 유독한 요산 성분을 빼기 위해 모래에 파묻어 6~12주 동안 발효시킨 뒤 여러 달 동안 말려 완성한다. 그래도 흥어나 상어류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암모니아 냄새로 인해 엄청난 용기를 가진 자도 목구멍으로 넘기기 힘들다는, 또한 일단 넘기고 나면 두리안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다는 식품이기도 하다. 한편 반으로 잘라 삶은 양의 머리인 ‘Svið’, 대구 등을 포며 말린 ‘Harðfiskur,’ 호밀빵 ‘Rúgbrauð’ 등, 우리의 입맛에는 딱히 잘 맞는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음식들이 전통 문화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에는 온실 재배를 통해 확보하고 있지만 슈퍼마켓의 채소나 과일은 이웃 네덜란드를 비롯한 수입산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겨울에도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아이슬란드를 즐기기 가장 좋은 계절은 아무래도 여름인 7, 8월이다. 지열을 이용한 스파인 ‘블루 라군(Blue Lagoon)’이나 고래, 또는 아이슬란드의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는 펭귄의 친척 조류 ‘푸핀(Puffin)’을 볼 수 있는 바다 투어 등이 대표적인 관광 코스다. 한편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레이카비크 시내 중심가의 주말 바 문화 또한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원래 아이슬란드의 물가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2008년 국가 부도 사태 이후 회복하는 상황이라 부담이 예전만큼은 아니니 미리 내년의 여름 휴가를 계획한다면 한 번쯤 고려해볼만 하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럽의 주요 도시를 통한 연계 항공편을 마련하고 있으니 환승 사이의 시간 간격을 포함한 운임을 고려해 선택할 것을 권한다. 🍷



COMMISSIONERS



인추협 2012 임시총회 개최



권성 위원장(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은 9월 6일 서울교총회관에서 '인추협 2012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회원수 확충 등 협의회 내실화를 추진하고, 사업의 이원화로 전문성과 추진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시총회에서는 정관개정안 및 이사회 임원 확대안을 가결했다.

빠른 취재보다 정확한 보도 강조



김종량 부위원장(전북중재부, 전 전북일보 편집국장)의 인터뷰가 9월 11일자 전북일보에 게재됐다. 김 부위원장은 "취재 기자들이 마감시간에 쫓기거나 경쟁사에 앞서기 위해 성급하게 보도하면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무리 좋은 내용이더라도 진실이 수반되지 않은 취재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정확한 보도가 언론의 생명임을 강조했다.

정치영화 개봉과 관련한 의견 피력



박성희 위원(서울 제7중재부,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은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8월 21일자 '정치 영화 3편이 온다... 후폭풍은 얼마나 불까'에서 박 위원은 정치영화로 인해 유권자가 감성 정치에 휩쓸릴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영화는 전달력이 강한 매체이므로 유권자가 매체 이해력을 길러 영화 내용과 현실을 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선거보도 공정성 확보방안' 세미나 참석



유익선 위원(서울 제7중재부,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은 9월 13일 '인터넷언론의 변화와 선거보도 공정성 확보방안'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유 위원은 인터넷 선거보도심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대상 메시지의 수량적 공정성, 질적 공정성뿐만 아니라 매체시장의 여건에 따른 내적 공정성, 외적 공정성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투게더경산' 이사장 선임



장익현 위원(대구중재부, 변호사)은 9월 13일 삼성사회봉사단이 설립한 사회적 기업인 '글로벌투게더경산'의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장 위원은 취임사를 통해 "글로벌투게더경산의 꿈은 다문화가정이 자립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것"이라며, 다문화가정의 일자리 창출, 다문화가족 체험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혁' 포럼 참석



주정민 위원(광주중재부,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8월 28일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주최한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혁' 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주 위원은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사진의 중립성 확보와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체제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권성 위원장, 국방대학교에서 특강



권성 위원장은 9월 26일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바다·사막·강·숲의 지정학적 의미”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권 위원장은 국경선인 사막, 강, 산맥, 숲, 바다를 비교하며, 그 중에서 바다가 분리선(分離線), 전장(戰場), 무역로(貿易路), 약탈로(掠奪路), 병참선(兵站線), 자원(資源)의 기능에서 탁월하기 때문에 가장 의미가 있는 국경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군사적 팽창과 패권국가를 추구할 수도 있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치(法治)에 의해 이루어진 ‘자강(自強)’과 함께 신뢰와 호혜로 연결된 주변국의 ‘환상동맹(環狀同盟)’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임 중재위원 대상으로 업무설명회 개최



위원회는 9월 21일 서울을 필두로 24일 광주, 25일 부산에서 각 중재부의 신임 중재위원을 대상으로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오광건 사무총장이 위원회 일반현황을 소개하고 각 본부장이 조정중재심리 절차, 본부별 업무 등에 대해 보고를 한 후, 위원 직무와 관련된 간담이 이어졌다.

위원회 사회공헌단, 창인원에 후원물품 전달



위원회 사회공헌단은 9월 26일 경기도 양평군 소재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인 창인원을 방문해 사회공헌기금으로 마련한 후원물품을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해 나눔의 손길을 펼칠 예정이다. (사진 좌측에서 세 번째 창인원 이경학 대표이사, 네 번째 오광건 사무총장)

손해배상 전담 중재부 신설

위원회는 9월 24일부터 손해배상사건을 전담하는 서울 제8중재부를 신설, 운영하고 있다. 손해배상 전담 중재부는 증가하고 있는 손해배상사건 처리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사실관계 확인에 만전을 기하고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설치됐다.

제8중재부 중재위원은 기존 서울 7개 중재부 위원 중 5인으로 구성됐다. 중재부장은 장현우(서울 제1중재부) 위원, 중재위원은 박성희(서울 제1중재부), 권일(서울 제2중재부), 박인협(서울 제3중재부), 이영진(서울 제5중재부) 위원이 맡았다.



조정중재사례 소개

명예훼손 사례 1

■ 절도 혐의 보도, 손해배상으로 조정성립

A신문사는 신청인이 병원 수술장비를 훔쳐 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고 신청인이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신청인은 자신이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적이 없고 경찰에 범행을 시인한 바도 없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백 5십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명예훼손 사례 2


■ 입찰 관련 의혹 보도, 정정보도로 조정성립

B신문사는 복합상가 입찰과정에서 조달청이 조사를 이례적으로 설계가보다 높게 제시해 모 대기업이 낙찰됐다고, 이에 대한 커넥션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조달청은 조사를 입찰 전에 공개하고, 이를 기준으로 건설사들이 입찰하므로 커넥션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사나 잡지를 통해서 사건을 접하다 보면, 당사자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사건의 경위 등에 대해서 지나치지 않나 싶은 사항까지 언급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관련자의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기사를 보고 배워 재발하는 위험까지 있을 것 같은 우려도 있었지만, 그냥 지나치곤 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정말 많이 줄어든 것을 체감합니다. 지난 9월 호 기획특집 '시정권고' 내용을 읽으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요한 활동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차준호)
- '의료분쟁, 의료중재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인터뷰 기사를 읽고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는 의료중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솔직히 몰랐으며 또한 제 주변 사람들도 생소해 했습니다. 둘째는 의료중재원이 조정과 중재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에서 그 필요성을 실감했습니다. (최병갑)
- '초상권과 알권리는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는 기고 잘 읽었습니다. 그동안 세계나 한국에서 일어났던 굵직굵직한 역사의 현장들을 현재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데는 당시 기자나 역사가가 쓴 '글'과 그들이 그린 '그림' 그리고 '사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상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순간의 생생함이나 역사를 남기려 하는 자의 노고와 어려움 또한 내 초상권만큼 귀중하게 여겨야 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독자인 저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만든 훌륭한 기고였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지)

이제 조정중재도 인터넷으로, 언론중재Eye-Net 서비스!!



언론중재Eye-Net 이란?

- 언론중재Eye-Net은 전자적으로 조정중재를 신청하고 심리절차를 진행하는 전자정보시스템입니다.
-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상담, 조정중재신청, 심리준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언론중재Eye-Net을 찾아주세요.

언론중재Eye-Net 이용안내

1. 전자제출

위원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 중 각종 서류를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전자민원

문고 답하기와 1:1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각종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자송달 확인

위원회에서 전자송달한 각종 통지서, 조정조서, 결정문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나의 전자심리

나의 사건 진행내역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열람이 가능하고, 진행 중 사건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Eye-Net <http://people.pac.or.kr>

공정한 언론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이런 일을 합니다.]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예 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 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불공정 보도라고 판단될 경우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결정문 등의 게재 또는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려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선거일 : 2012년 12월 19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12년 4월 23일부터
2013년 1월 18일까지 운영됩니다.”



불공정 보도로 인한 선거후보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기사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 의결하여 시정요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결정문 등의 게재 또는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리고, 시정요구 사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각, 각하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선거후보자와 언론사의 반론보도청구회부사건을 심의합니다.

선거기사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정당의 경우 중앙당)는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후보자나 언론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인용 또는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